동물보호 · 복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 복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동물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유기 ·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기관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정해진 도축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들에게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은 제한됩니다.

동물보호 · 복지 1
1.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4
1.1. 동물보호·복지 법령과 기본원칙 4
1.1.1.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4
1.1.2.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5
1.2. 동물운송 시 동물보호·복지 7
1.2.1.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7
1.3.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11
1.3.1.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11
1.3.2. 동물의 보호 및 구조 15
2. 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20
2.1. 반려동물 보호·복지 20
2.1.1.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20
2.1.2. 맹견의 사육 및 관리 24
2.2. 실험동물 보호·복지 27
2.2.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7
2.2.2.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31
2.3. 농장동물 보호·복지 33
2.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33
2.3.2. 도축 및 도축시설 기준 39
2.4. 전시동물 보호·복지 41
2.4.1. 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41
2.4.2.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45

1.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1.1. 동물보호·복지 법령과 기본원칙

1.1.1.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동물복지 (Animal Welfare)
의미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4조)	▪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
입법례	▪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 위 국가들의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질병·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행위 등을 종류별로 차등화하기도 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은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였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맹견,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 「대한민국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9 참조).

▪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및 「형법」 제366조 참조).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2024년 2월,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내용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위의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개사육농장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2027년 2월 7일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호) 제5조 및 부칙].

※ 이 콘텐츠에서는 동물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위주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1.1.2. 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사육·관리하는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

▪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적정한 사육 및 관리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1.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3.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4.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위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동물이 아프다면 동물병원을 이용하세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1.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 진료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지역별 동물병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술방법

▪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 ※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시거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동물운송 시 동물보호·복지

1.2.1.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동물을 운송할 때에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동물운송자의 운송 시 준수사항

▪ 동물운송자는 동물의 운송 중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제2항).

-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해야 하며,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 것
-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동물운송자 및 운송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할 것
-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제공할 것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 동물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이하 “동물운송자 등”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4조).

- 동물운송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것
- 동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동물운송 세부규정」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운송에 적용할 것

- 동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동물을 적절하게 다룰 것
- 운송에 적합한 동물만을 선별·운송할 것
- 운송하는 동물에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할 것
- 운송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 시 적용할 것
- 동물의 이동, 상·하차 및 운송과정에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운송 전에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운송할 것

▪ 동물운송자 등은 동물 운송 전 차량의 안전상태, 세척·소독상태, 운송소요시간, 적정소요면적, 휴식, 사료, 물, 온도·환기조건, 운송 중의 동물관찰, 질병관리 및 비상대책 등 동물 및 차량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운송을 개시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8조제1항).

운송동물 선발기준

▪ 동물운송자 등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5조).

- 서로 다른 축종의 동물을 동일 차량으로 함께 운송하지 말 것
- 동일 축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동물을 성축과 동일구획 내에 함께 운송하지 말 것. 다만, 자연포유 중인 새끼는 어미와 함께 운송할 것
- 축사 내 같은 구획 내에서 사육한 동물은 가급적 함께 운송할 것
- 공격적 성향이 강한 개체는 격리하여 운송할 것
-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은 운송하지 말 것. 다만,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실험대상 동물이거나 긴급 도축 및 수의학적 처치 등 수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지친 동물
  - √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거나 각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동물
  - √ 양쪽 눈 모두를 실명한 동물
  - √ 탯줄을 잘라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린 동물
  - √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동물
- 동물의 운송 전에 축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와 물을 적절하게 공급할 것
  - √ 축종에 관계없이 동물이 운송차량으로 상차되기 전까지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 √ 운송차량에 상차하기 전, 소와 오리는 4시간,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
  - √ 돼지는 운송 중 멀미와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차량에 상차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을 하도록 할 것. 다만, 공복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그 밖의 포유류 및 조류의 경우에도 운송되기 일정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을 것
  - √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적용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동물운송차량의 설비조건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및 운송용 우리 등 운송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6조).

- 청소와 소독이 용이할 것
- 적재공간은 운송동물의 축종, 종류, 크기 및 운송여건에 따라 그 면적과 높이가 적절할 것
- 상·하차 및 운송 중에 작업자 및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운송차량에는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을 것
- 동물운송차량은 적재된 동물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포유류를 운송하는 경우 측면부 가림막을 동물이 머리를 든 상태의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것
- 눈, 비, 바람 및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천 등을 이용한 가림막을 설치할 것
- 소 또는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재공간 내부에 동물을 구획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만, 적재함 면적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 동물의 추락이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
- 동물의 분변이나 그 밖의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복층 차량의 경우에는, 상층에 적재된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의 동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 바닥재는 동물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할 것
-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제공될 것
- 운송되는 동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위의 자유공간이 제공될 것. 다만, 닭 및 오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10kg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 및 그 밖에 젖떼기 이전의 어린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줄 것
- 동물의 상차 이전, 하차 이후에 차량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 차량적재공간은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를 위한 장치를 장착할 수 있을 것

운송소요면적의 기준

▪ 동물 운송 시, 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에 허용된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돼지, 닭 및 오리는 운송소요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혹서기에는 증가, 혹한기에는 감할 수 있습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9조).

> ※ 동물별 운송소요면적의 기준은 「동물운송 세부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차 시설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상·하차 시설의 설비조건

▪ 동물 운송 시 상·하차 시설의 구비 및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1항).

- 이동로 및 상·하차대 등 동물의 상·하차 시설은 동물의 이동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하며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이동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운용될 것

- 동물의 이동 중 동물의 관찰 및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일 것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동물이 추락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양 측면에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물의 추락 및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밝기의 조명하에서 동물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것. 다만, 가금의 상·하차의 경우 어두운 조명하에서 포획, 운반 및 상·하차 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상·하차와 동물의 원활한 이동 및 부상방지 등을 위하여 상·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상·하차 각도는 축종별로 돼지는 20도, 소는 26도를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의 상·하차 시 주의사항

- 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동물을 상·하차 시킬 경우에는 동물운송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2항).
  - 동물의 부상, 고통, 흥분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을 이동시킬 것
  -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몰이판이나 몰이용 깃발 등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것
  -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
  - 조류를 상·하차하는 경우, 조류의 날개뼈가 탈구되거나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와 운송용 우리는 조심스럽게 취급할 것
- 동물의 상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4항).
-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차시켜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5항).
- 동물의 하차 시, 수의사 또는 경험이 많은 동물취급자가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운송 도중 부상을 입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긴급도축 되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6항).
- 동물운송자는 하차작업 종료 후 동물운송차량의 외부 및 적재함 내부를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오폐수, 배설물 및 깔짚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자의 손과 신발 등에 대한 소독 및 운송 작업 시 사용하였던 작업복을 폐기 또는 세탁해야 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7항).

동물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동물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물 및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동물운송 세부규정」 제10조제3항).
  - 전기충격기의 사용
  -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행위
  - 쇠 또는 나무 등 경질소재의 파이프나 몽둥이 등의 사용
  - 사람의 손·발을 이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 생식기, 코, 꼬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
  - 머리, 귀, 뿔, 다리 및 털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동물을 들어 올리거나 끄는 행위(다만, 조류의 상·하차 시 두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행위는 제외)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시설물을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함 또는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
- 의식이 있는 동물을 던지는 행위
- 그 밖에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3.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1.3.1. 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

누구든지 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 √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동물의 도살방법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제47조제1항 참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이거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이거나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만,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로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제외함

▹ 그 밖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피학대동물을 함부로 포획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기동물 등의 포획 등 금지

▪ 누구든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함)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10조제3항).

금지행위	처벌내용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 및 학대행위의 금지

▪ 소유자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제10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제5항).

금지행위	처벌내용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2.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하 “반려동물”이라 함)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육·관리·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3. 위 2.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도 금지됩니다.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제7항).

▹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함)에 규정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함)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은 제외함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적절한 사육·관리를 해야 함

1.3.2. 동물의 보호 및 구조

유기동물 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

동물보호센터 등 신고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 학대를 받는 동물
- 유실·유기동물

>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유실·유기동물이란?**
>
>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및 제3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학대를 받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참조, 제37조 참조, 제39조제2항, 제69조제1항 참조 및 제73조제1항 참조).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 동물보호관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3항).

▪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4항).

보호동물의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함)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 참조, 제34조제1항제1호 참조, 제2호 참조 및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 보호동물에 대한 공고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조동물-반환대상 동물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 동물의 반환 등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 동물의 기증·분양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

> ※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알림/자료-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동물을 새로운 가족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권 취득

▪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참조, 제40조 참조 및 제43조).

▹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Q&A] 소유자가 장기입원이나 병역복무 등으로 인해 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제4항 참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다만, 해당 맹견에 대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경우는 제외함)
6. 그 밖에 위의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됩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동물의 기증 및 분양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함)이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3항).

소유자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육계획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중인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 제34조제1항제3호, 제41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동물의 반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구조된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 참조 및 제41조제1항).

1.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해당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위 2.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3항).

사육계획서 이행 점검

▪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동물보호관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4항 참조).

보호비용의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 참조, 제2호 참조 및 제42조제1항).

▪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참조 및 제4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비용징수통지서를 통해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 그 밖에 동물구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반려동물 분실/구조-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 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

2.1. 반려동물 보호·복지

2.1.1. 반려동물의 등록 및 관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자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함)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함]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함)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전단 참조).

> ※ **주택·준주택이란?**
>
>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 · 기숙사
>
> · 다중생활시설
>
> · 노인복지주택
>
> · 오피스텔

동물등록하기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본문).

- 도서(島嶼)[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단서).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위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함)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동물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에 대한 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 내용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 ※ 반려동물의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데려오기-반려견·반려묘 입양 및 등록-반려견은 등록대상 동물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육지 이탈 방지

▪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이하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상	처벌내용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3호)

반려동물과 외출 시 준수사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구분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배설물 수거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2.1.2. 맹견의 사육 및 관리

동물보호를 위해, 맹견의 수입 및 사육은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맹견"이란?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함)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멀티미디어-카드/한컷-"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맹견의 수입신고

▪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품종, 수입 목적, 사육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동물등록번호(등록한 경우만 해당함)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1호).

맹견의 사육허가

▪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참조, 제23조제1항 참조, 제18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및 제13조제2항 참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할 것
-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

▪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됩니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수의사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 제46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6호).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제10조), 등록대상동물 관리(「동물보호법」 제16조), 맹견의 관리 등(「동물보호법」 제21조)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제10조), 등록대상동물 관리(「동물보호법」 제16조), 맹견의

관리 등(「동물보호법」 제21조)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제2항 전단).

※ 위의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7호).

정기교육 이수 의무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참조).

>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기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목줄 및 입마개 착용 기준	이동장치 기준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위해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4호).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5호).

▪ 위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2호).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4호).

2.2. 실험동물 보호·복지

2.2.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동물실험시행기관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동물보호법」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2호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기기
   5) 화장품
   6) 마약
2. 의료기관
3. 위 1.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위 1.의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 사료

2. 농약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 국제백신연구소

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1항).

▪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2항).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람

▪ 윤리위원회에는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3항).

▪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5항).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6항).

위반 시 제재

▪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1호).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윤리위원회의 기능

▪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

-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함. 이하 같음)
-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실험동물 보호·복지-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2호).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의 발생 즉시 윤리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본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 그 밖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3호).

▪ 다만, 위 중요사항을 제외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후 감독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감독 요청시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55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4호).

▪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5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5조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5호).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5조제4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6호).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5조제5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7조제1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9호).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54조제2항).

▪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54조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4항제4호).

2.2.2. 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대상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함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전임수의사의 자격

▪ 전임수의사는 수의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또는 2. 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임수의사의 업무

▪ 전임수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의 원칙

▪ 동물실험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1.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
2.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시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것
4.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진정제·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동물실험을 한 사람은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할 것

   ※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음
6. 5.의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동물실험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본문).

-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외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단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은 금지됩니다.

해부실습의 금지

▪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본문).

해부실습의 금지의 예외

▪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것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학교에서 추진하는 동물 해부실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 2021. 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농장동물 보호·복지

2.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농장

▪ 축산농장 중 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이하 "농장동물"이라 함)가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함)은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

▹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증신청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함)를 첨부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표 9의2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2조).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참조).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참조).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4항).

인증의 갱신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통지받습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 참조).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5항).

▪ 인증농장의 경영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6항).

▪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18호의7서식).

▪ 신청인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받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제2항).

>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장동물-인증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인증농장 표시를 하며, 생산한 축산물에도 표시를 합니다.

인증농장의 표시

▪ 인증농장은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1항 및 별표 9의4 제1호).

인증농장의 표시



1.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1.).
2. 인증농장 표시를 할 때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2.).
3. 인증농장 표시를 할 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 비고 3.).

※ 인증농장의 표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인증농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농장동물-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참조 및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구분	표시요건
식육 및 포장육	▪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원유 및 식용란	▪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식육가공품	▪ 식육 및 포장육의 표시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음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	▪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음

▪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3조제2항).

▪ 동물복지축산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합니다. 다만,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의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 제1호가목).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도형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

▪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위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3항 및 별표 9의5 제1호가목).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달걀 난각번호의 의미, 알고 계시나요?

- 달걀 껍데기에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0823 M3FDS 2”와 같은 표시가 있다면, 8월 23일에 산란되었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농장에서 생산되었으며, 평사 환경에서 얻은 달걀이라는 의미입니다(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안전-식품안전 지식-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바로알기 참조).



<이미지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안전-식품안전 지식-달걀 노른자 진한게 더 좋을까?>

-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1 별도 5 참조).

  - 번호 1: 방사 사육(자유방목 사육)
  - 번호 2: 축사내 평사[평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 포함) 사육]
  - 번호 3: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이상인 케이지 사육)
  - 번호 4: 기존 케이지(마리당 0.075㎡ 미만인 케이지 사육)

- 1마리/㎡) 2 평사(케이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 9마리/㎡) 3 개선케이지(0.075㎡/마리 13마리/㎡) 4 기존케이지(0.075㎡/마리 20마리/㎡)">

<이미지 출처: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식품안전-식품안전 지식-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바로알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표시를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67조제1항).

금지행위	처벌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 해당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다음의 행위(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나. 「동물보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따르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 왼쪽의 가.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1항제8호) ▪ 왼쪽의 나. 및 다.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2항제11호)

인증의 취소

▪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5조제1항).

※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65조제2항).

2.3.2. 도축 및 도축시설 기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물 도살의 원칙

▪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서는 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가스법, 약물 투여법
-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도축과 관련한 시설은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한 기준에 따라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차 시설의 기준

▪ 동물의 하차(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될 것
-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지 말 것
-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하차 시 주의사항

▪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제2항).

-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5조제3항).

계류 시설의 기준

▪ 도축될 동물의 계류(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2호 및 제6조).

- 계류장은 마리 당 적정 사육밀도(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에 따라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할 것
-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될 것
-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것
-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해야 하고.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할 것
-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 동물을 보정(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해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3호 및 제7조).

-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하지 말 것. 다만,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음
- 섀클(shackle: U자 모양의 연결용 철물)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섀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할 것.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섀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
- 조류의 경우, 섀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말 것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 동물을 기절(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그 밖의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함)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2조제4호 및 제8조).

-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할 것
-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 ※ 축종별 기절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도축 세부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할 것

방혈 시 준수사항

▪ 방혈(放血: 피 빼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도축 세부규정」 제9조).

-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할 것
-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
  - √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 √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체임버(chamber: 처리실)를 나온 후부터 60초 이내
-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
-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것
-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지 말 것

2.4. 전시동물 보호·복지

2.4.1. 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 환경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두어야만 설립이 허가됩니다.

허가요건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함)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 ※ 허가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변경허가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방법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 √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 √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 √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 √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 √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7.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가 취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임원 중에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는 운영의 금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위의 설립허가 결격사유 중 1.부터 6.까지 또는 8.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8.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함

4.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수의사, 사육사 등은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함)은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함)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교육기관

▪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구분	교육기관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 국립생태원
	▪ 야생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 해양환경공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및 별지 제6호서식).

교육횟수

▪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2.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전시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됩니다.

학대행위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분	금지행위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아래 4.부터 8.까지의 학대행위로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보유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	4.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5.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8. 보유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보유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4호).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면 안 됩니다.

이동전시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참조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 √ 과학관
  - √ 생물자원관
  - √ 국공립수목원
  - √ 야생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
  - √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 √ 생물자원 보전시설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
  - √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5호).

[Q&A] 동물카페의 동물 전시는 전면 금지되나요?

- 동물카페의 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등의 전시가 금지되는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고, 동물카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조류, 파충류 등을 전시하거나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 가축(소, 말, 염소, 돼지 등)을 전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시킨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4. 1.), 2~3쪽 참조].

※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 『야생생물 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은 금지됩니다.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본문).

-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단서).

※ 동물원에서 동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22.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 보유 금지

▪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보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6호).

전시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실시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피모(被毛)·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분변검사
- 영상진단검사
- 혈액검사

▪ 위에 따라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1호).

검사기록의 보존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검사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2호).

검사 후 조치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가축전염병
- 수산동물전염병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 인수공통감염병

▪ 위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